

의안번호	제 229 호
의결연월일	2005. 6.30

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6. 15 예산군수
나. 회부일자 : 2005. 6. 17
다. 상정일자 : 2005. 6. 22

제124회 예산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사회산업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환경보호과장 : 장동관)

가. 제안이유

-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(매립장, 소각시설)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민 지원기금의 재원 조성과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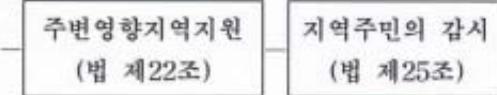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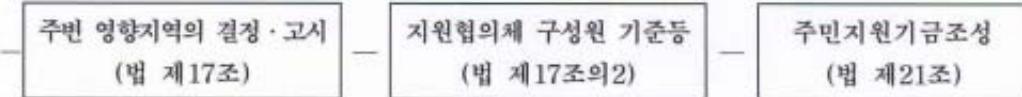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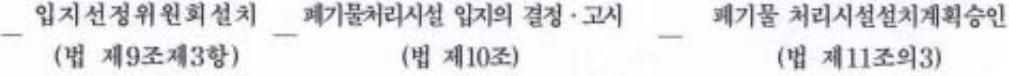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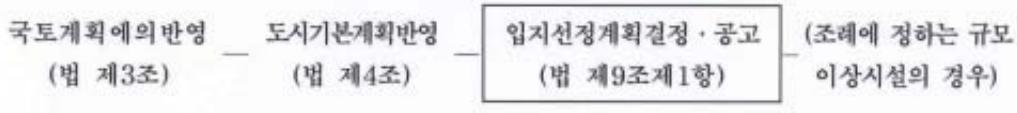
나. 주요골자

-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정하여야 할 규모를 정함.(안 제3조)
- 주민 지원협의체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능에 관하여 정함.(안 제4조, 제5조)

-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6조)
- 기금의 용도 및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.
(안 제7조, 제8조)
- 기금관리를 위한 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. (안 제9조, 제10조)
-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둘 수 있음.(안 제12조)
- 지원협의체에서 시행할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.
(안 제13조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이용익)

- 본 조례안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추진절차를 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하여 개략 보고 드리면,



○ 조례 제정 시기

위 표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 결정 · 공고시 조례에 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일 경우에 결정 · 공고토록 규정한바, 동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 결정 · 공고 이전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
○ 조례와 협약서와의 상충여부

2000. 9. 5자 주민요구사항 협약서 및 2004. 3. 31자 대률리 주민지원협의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회신 사항과 본 조례안과의 상충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함.

○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 · 운영 (안 제4조)

이미 구성된 대률리 주민지원 협의체와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는 협의체와의 대표성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의 여부.

○ 주민 감시요원

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으로 지급토록 규정된바, 본 조례에 감시요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.

○ 여타 조항은 같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고, 기금 관리를 위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· 답변요지

- 생 략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심사결과

-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요지

-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u>제6조(신설)</u>	<p>제6조(지역주민의 감시)①군수는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(이하 “감시요원”이라 한다)으로 위촉하고, 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·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③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,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.</p> <p>④감시요원은 필요시 요청에 의거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.</p>
<u>제6조~제18조(생략)</u>	<p>제7조~제19조(원안 제6조~제18조와 같음)</p> <p>제13조(사업계획서 제출) 지원협의체에서 <u>제7조의</u>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~3.(생략)</p>
	<p>제13조(사업계획서 제출) -----</p> <p><u>제8조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1.~3.(원안과 같음)</p>